

별첨

투자자 중심으로의 변화를 통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2021. 1.

금 융 위 원 회
금 융 감 독 원
한 국 거 래 소
금 융 투 자 협 회

목 차

I. 추진배경	1
II. 공모펀드 현황진단	2
1. 공모펀드 현황	2
2. 공모펀드 성장정체의 원인	3
III.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추진방안	5
[추진전략 I] 펀드운용의 책임성·효율성 제고	6
I-1 펀드운용의 책임성 강화	6
I-2 펀드운용의 효율성 제고	8
[추진전략 II] 투자자 중심의 판매환경 구축	10
II-1 판매보수·수수료 제도정비	10
II-2 온라인 판매채널 활성화	14
[추진전략 III] 다양한 공모펀드 출현 유도	17
III-1 외화표시 MMF 도입	17
III-2 ETF 상품 다양화	19
III-3 새로운 형태의 펀드 도입	20
[추진전략 IV] 투자자 지원인프라 강화	21
IV-1 펀드·판매사 관련 정보의 효과적 제공	21
IV-2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보완	22
IV. 향후 추진계획	23
[붙임1] 공모펀드 시장 현황	24
[붙임2] 투자자의 펀드가입 관련 현황	25

I. 추진배경

- 공모펀드는 소액투자자가 가능하고 중위험·중수익 추구에 적합한 일반국민의 전통적인 자산운용수단
 - 또한,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공급*, 부동산에 편중된 가계 자산구조 개선을 위해서도 중요한 금융투자상품
 - * 공모펀드는 증권형펀드·MMF가 대부분(약 88%)으로 주로 주식·채권에 투자
 - 그러나, 공모펀드의 성장이 정체*된 가운데, 특히 개인투자자의 공모펀드에 대한 선호가 크게 저하**
 - * 공모펀드 규모(조원) : ('10) 198.6 → ('15) 213.8 → ('19) 242.3 → ('20) 274.7
- MMF 제외시 : ('10) 133.6 → ('15) 127.7 → ('19) 168.3 → ('20) 172.6
 - ** 공모펀드 개인투자자 잔고비중(%) : ('15) 51.0 → ('19) 47.6 → ('20) 41.5
 - 장기간 정체되었던 국내 주식시장, 사모펀드·ELS 등 경쟁 관계에 있는 상품의 활성화 등이 성장정체의 외생적 요인
 - 타 상품대비 낮은 수익률, 보수·수수료 부담, 투자자 이해와 상충된 판매·운용사의 영업행태 등 내재적 요인도 크게 작용
- 한편, 저금리 지속 등에 따른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금융투자 관심이 증대
 - 다만, 최근 DLF·사모펀드 관련 일련의 투자자 피해사태 발생, 공모펀드 신뢰부족 등에 따라 '동학개미 운동'과 같은 직접 투자 방식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는 경향

- ➡ 전문가에 의한 운용, 분산투자 등의 장점이 있는 공모펀드를 통해 국민들의 안정적인 재산증식을 지원할 필요
- ➡ 공모펀드가 합리적인 수익률·비용을 제공하는 국민의 대표 투자상품이 되도록 운용·판매·상품 등 전반의 제도·관행 개선

II. 공모펀드 현황진단

1. 공모펀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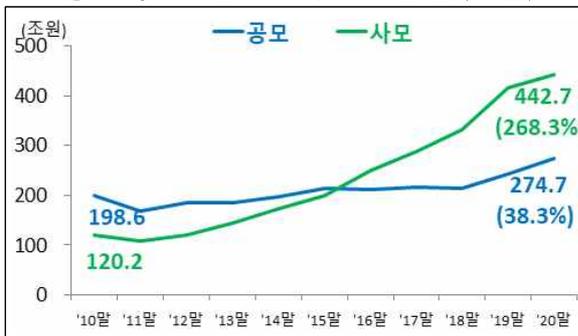
□ 최근 약 10년('10.12.~'20.12.)간 사모펀드·ELS 등 경쟁상품이 크게 성장(+268.3%, +119.6%)한데 비해 공모펀드의 성장은 미미(+38.3%)

○ 주요국(미국·영국)과 비교해도 성장세가 약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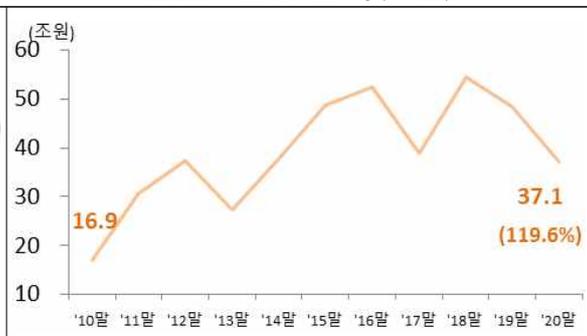
* 공모펀드 규모('10년말 → '19년말, 10억\$, 순자산)

: (미국) 11,820.7 → 25,687.7 [+117.3%] (영국) 854.4 → 1,889.3 [+121.1%]

< 공·사모 펀드 규모 현황(조원) >



< ELS 발행잔액(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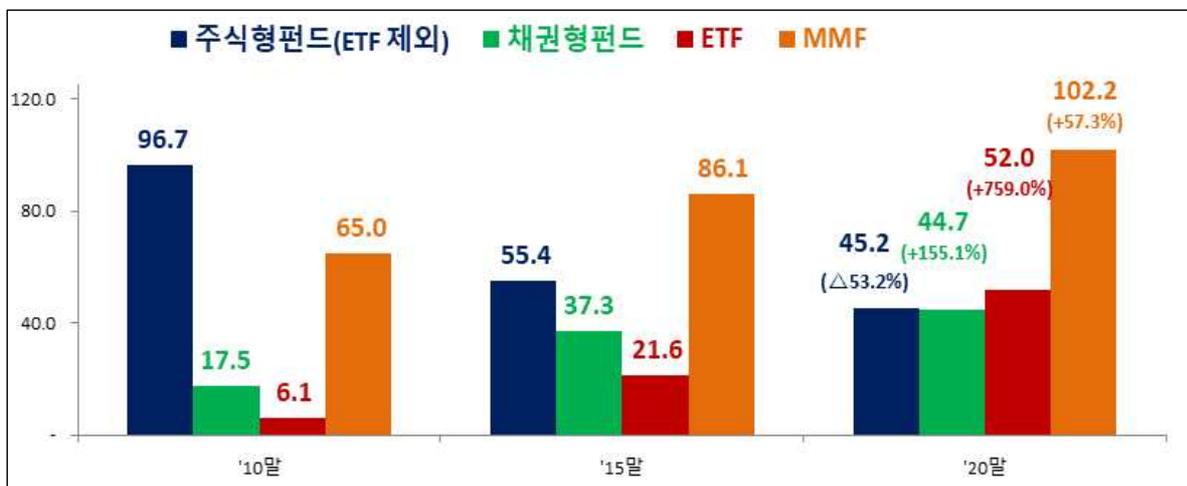


□ 전통적 공모펀드 상품인 주식형펀드(ETF제외)는 규모가 감소(△53.2%)한 반면, ETF¹⁾·MMF²⁾는 크게 증가(+759.0%, +57.3%)

* 1) 낮은 수수료·보수, 거래 용이성 등이 주요 증가 요인

2)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의한 안전자산 수요 확대에 최근 크게 증가

< 공모펀드 유형별 규모 추이 >



2. 공모펀드 성장정체의 원인

- ① (운용성과 미흡) 그간 중장기적으로 공모펀드의 운용성과가 투자자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측면

< 공모펀드·예금 연간 수익률 비교 (단위 : %) >

구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평균 ('10~'19)
공모펀드(A)	10.4	△7.6	7.7	2.7	0.7	2.3	1.3	10.3	△6.1	6.8	2.7
예금(B)	3.6	4.0	3.5	2.8	2.5	1.8	1.5	1.7	2.0	1.8	2.5
차이(A-B)	6.8	△11.5	4.2	△0.2	△1.7	0.5	△0.3	8.7	△8.1	5.0	0.2

* A : 공모펀드 수익률(보수 차감) / B : 1년 정기예금 이자율

- 운용사의 운용역량·책임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 지속

* 예) 운용사가 재량적으로 운용하는 주식형펀드의 '17~'19년 연평균 수익률(7.6%)이 지수를 추종하는 주식형 ETF·인덱스펀드 수익률(10.8%)을 하회

- 한편, 그간 펀드 운용규제 합리화 노력이 지속*되었으나, 보다 탄력적인 펀드운용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요청도 지속

* 분산투자 규제 등 국내 공모펀드 운용규제는 해외 주요국과 유사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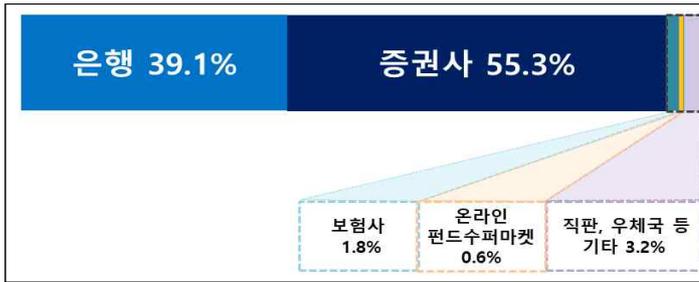
⇒ (개선방향) 펀드운용의 책임성·효율성 제고 → 운용성과 개선

- ② (판매채널 신뢰저하) 펀드 가입시 판매채널의 영향이 크나*, 판매채널간 차별화가 부족하고 투자자 입장의 판매관행 미형성

* 펀드 투자자의 약 59%가 판매사 상담후 펀드선택['20년, 투자자보호재단 설문]

- 판매사는 투자자에 유리한 펀드보다 판매사에 제공하는 보수·수수료가 높은 펀드를 중심으로 판매할 유인이 상시 존재
- 온라인 등 비용이 저렴한 판매채널의 활성화가 미흡하여 아직까지 증권사·은행 창구 중심의 판매가 대부분

< 판매채널별 판매잔고 비중('20.9월) >



< 온라인펀드 비중('20.10월) >



- 투자자의 재산상황·투자목적 등을 반영하여 투자자에 적합한 펀드 추천이 가능한 투자자문을 통한 판매도 미미

⇒ (개선방향) 투자자 입장에서 펀드가 판매되는 환경조성

③ (상품 다양성 부족) 투자수요 다변화로 상품 다양화 수요 증대

- MMF·ETF의 운용대상·방식 확대, 공모펀드를 통한 실물 투자*(부동산, SOC 등) 기회제고 등 요구

* 환금성이 낮고, 신속한 투자자금 모집이 필요한 실물투자 특성상 대부분(약 97%) 실물펀드는 사모펀드로 운용 중

⇒ (개선방향) 투자자 선호가 큰 MMF·ETF·실물공모펀드 다양화

④ (투자자 지원 필요) 펀드선택시 투자자의 어려움이 크며*, 복잡한 펀드구조, 비유동자산 투자확대 등 투자자 보호 필요성 증가

* 펀드선택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투자자 비중 80.2%('20년 투자자보호재단설문)

- 금융투자협회 등에서 다양한 펀드정보*를 제공 중이나, 투자자 스스로 직접 비교·분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

* 펀드별 수익률, 설정액, 보수·수수료, 투자설명서 등

- 재간접펀드 및 개방형펀드의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투자자 보호차원의 관리·감독 필요

* 최근 해외펀드 유동성 문제로 동펀드에 투자한 국내펀드 환매중단 사례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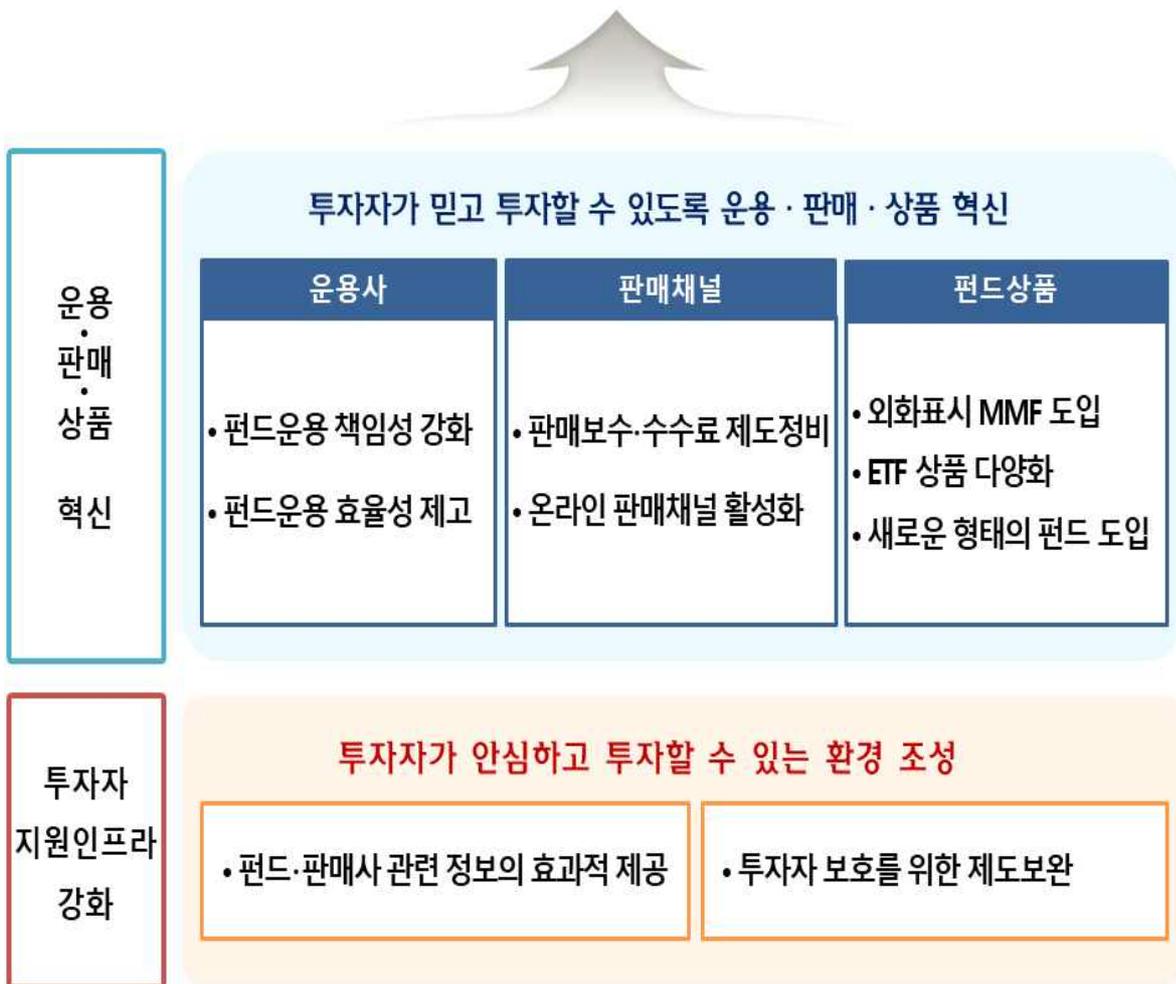
⇒ (개선방향) 펀드정보 활용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제도 보완

III.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추진방안

〈 기본 방향 〉

- ◆ 공모펀드가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대표적 국민재산증식 상품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투자자 중심으로 변화를 추진
 - 합리적인 수익률·비용을 제공함으로써 투자자가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운용사·판매채널·펀드상품 혁신
 - 투자자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투자자보호 제도 등 투자자 지원인프라 강화

공모펀드 재도약으로 국민 재산형성과 자본시장 발전 지원



추진전략 | 펀드운용의 책임성·효율성 제고

- 펀드 운용성과의 운용사·투자자 공유 활성화 → 책임운용 강화
- 보다 탄력적인 펀드운용이 가능하도록 규제개선 지속
- ⇨ 운용사가 펀드의 운용성과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

I-1 펀드운용의 책임성 강화

- ◆ 운용사의 펀드 자기재산 투자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고, 성과보수펀드의 새로운 형태를 도입·활성화 촉진

(1) 운용사의 공모펀드 자기재산 투자(시당투자) 실효성 제고

- **(현황)** 책임운용 관행형성을 위해 자기재산 투자* 지도 중(17.5월~)
* 신규 공모펀드 등록시 운용사 등의 고유재산을 2억원, 3년 이상 투자 등
 - 소형운용사는 자기재산 투자부담이 크며, 투자금액 차별화 유인이 없어 보다 적극적 책임운용 장려에 한계
- **(개선)** 現 제도를 기본으로 소형운용사 부담을 합리화하고, 자기재산 투자규모에 따른 인센티브 도입(행정지도 법제화 추진)
 - ① 소형 운용사(예 : 수탁고 1조원 이하)에 대해 투자금 분할납입* 허용
* 예) 존속기한 5년 이상(또는 존속기한 부재) 펀드는 1년간 분할납입 허용
 - ② 일정액 이상(예 : 자기자본의 1% [단, 최소 4억원 ~ 최대 10억원]) 투자시 소규모펀드(50억원 미만 등) 관리¹⁾ 및 운용규제²⁾상 인센티브* 부여
* 1) 자기재산 투자펀드의 소규모펀드 판단기간 연장(예 : 설정후 1년 → 2년)
2) 분산투자한도의 불가피한 초과시 해소 유예기간 완화(예 : 3개월 → 6개월)
 - ③ 인센티브 도입을 감안하여 투자자에 펀드별 자기재산 투자규모, 운용사 타펀드와 비교시 수준 등 안내(투자설명서·자산운용보고서)

☞ [조치 필요사항] ①·② 자본법(§182) 개정, ③ 공시서식·금투업규정세칙 개정

[2] 성과보수펀드 활성화

- **(현황)** 공모 성과보수펀드('17년 최초출시)는 엄격한 요건 등에 따른 ①**운용사**·②**판매사 부담으로 활성화 미흡**(14개·225억원, '20.12월)

- ① **(운용사) 낮은 기본 운용보수 수취**(일반펀드의 50% 이하), 개방형 펀드는 **환매시 성과보수 수취**(수취시점 불확실), **부(-)의 성과시 성과보수 수취금지**
- ② **(판매사) 투자자별 성과보수를 산정해야 하므로 판매사의 행정비용이 크며, 성과보수 구조에 대한 투자자 설명도 어려운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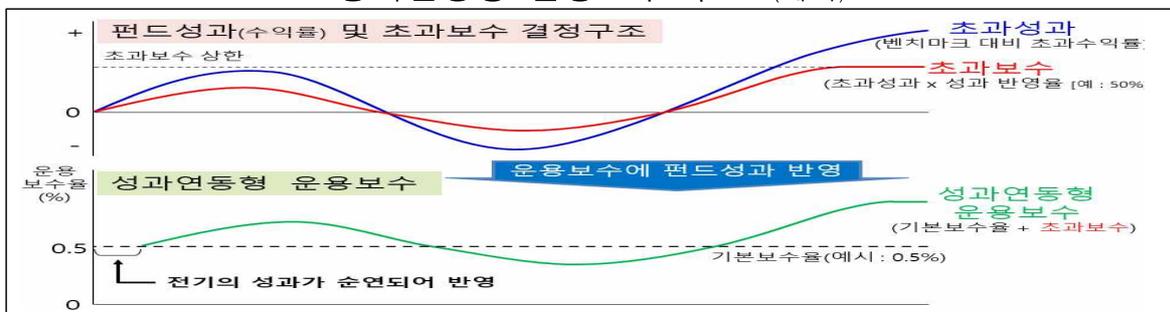
- **(개선)** 현행 성과보수펀드 유형외에 **운용사·판매사의 부담 문제를 보완한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유형을 추가 도입**

- **펀드운용성과(예 :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손실)에 연동하여 운용보수가 변경***되는 구조(운용보수外 별도 성과보수는 미수취)

* 일정기간(예 : 분기) 동안 운용성과의 일정비율을 다음기 보수율에 대칭적(+, -)으로 반영(기본보수율 + 운용성과의 일정비율 / 단, 상하한 설정)

[해외사례] Fidelity 등 글로벌 운용사도 유사한 성과보수펀드 운용 중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구조 (예시)>



⇒ 일반펀드 수준의 기본보수 수취가 가능하며, 운용성과에 따른 보상(+).불이익(-)이 정기적으로 운용사에 제공·부과

⇒ 펀드단위로 성과산정 → 판매사가 투자자별 성과산정 불필요

- 한편, 전기의 운용성과가 순연되어 반영되는 구조로 단기투자보다 장기투자에 적합 → 투자자에 **동사향 설명 의무화**

※ 성과보수펀드도 시딩투자(4~10억원)시 수준의 인센티브(6p ②) 부여 추진

☞ [조치 필요사항] 자본법 시행령(§88) 개정(금감원·업계와 TF 구성 → 세부안 마련)

I-2 펀드운용의 효율성 제고

◆ 펀드의 투자전략 변경 용이성을 제고하고, 펀드 운용규제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정비하여 효율적인 펀드운용을 지원

[1] 펀드의 투자전략 변경 용이성 제고

□ **(현황)** 공모펀드는 통상 장기·개방형 펀드로 설정·운용되나, 투자전략* 변경이 어려운 측면(수익자총회 결의 필요**)

* 주된 투자대상 자산, 펀드 종류,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 등

** 수익자가 다수인 공모펀드는 현실적으로 수익자총회 결의가 어려운 측면

⇒ 펀드운용이 현재 경제상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발생

□ **(개선)** 펀드의 탄력적 운용, 소규모펀드 정리 지원 등을 위해 투자전략 변경절차 간소화

① 설정후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소규모로 운용되는 펀드는 운용사 이사회 결의만으로 투자전략 변경 허용

[펀드 투자전략 변경 허용 방안(안)]

■ (요건) 설정 후 10년이상 경과 및 최근 3년간 일평균 수탁고 50억원 미만

■ (변경절차) 투자자 의견 제출 기회를 충분히 보장한 후 변경

① 투자전략 변경 2개월전 투자자에 변경 관련 의사표시 요청

② 투자자의 반대의사 표시가 일정수준 미만(예 : 총좌수의 10% 미만)인 경우 자산운용사 이사회 결의만으로 투자전략 변경 허용*

* 단, 반대의사를 가진 투자자에 대해서는 환매기회 보장

- 소규모펀드 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한 행정지도* 법제화도 추진

* 소규모펀드(설정 1년후 50억원 미만 펀드 등) 비율이 5%를 초과하는 운용사는 공모펀드 신규등록 제한

② 그 외 펀드는 연기수익자총회* 의결요건 합리화를 통해 투자 전략 변경 등 관련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20.12월 국회에 법안 제출)

* 수익자총회 미결의시 2주후 개최(수익자총회 대비 의결요건 완화)

현 행	개 선
출석 의결권의 과반수 & 수익증권 총좌수의 1/8 이상	출석 의결권의 2/3 & 수익증권 총좌수의 1/16 이상

☞ [조치 필요사항] ① 자본법 시행령(§217) 개정, ② 자본법(§190) 개정

(2) 운용규제 개선 지속

□ (현황) 펀드시장 상황을 고려한 운용규제 정비*를 지속 추진 중

※ 현재 제도개선(법개정) 중 과제

- 특별자산 펀드의 자금차입·대여 허용, 환매금지형 펀드의 존속기한 설정의무 완화, 공모펀드 후순위 투자 허용 : '20.7월 국회에 법안 재발의
- 펀드의 피투자펀드 지분보유한도 완화(20% → 50%) : '20.12월 국회에 법안 제출

□ (개선) 그간 제기된 개선건의를 토대로 펀드간 규제차익 해소, 운용 자율성 제고 등을 위한 규제정비 지속

① 요건*을 충족한 채권형 ETF(피투자펀드)를 공모펀드(투자펀드)가 펀드재산의 100%까지 편입 허용(현재 주식형 ETF를 100% 편입하는 것은 가능)

* ETF의 편입 종목수, 특정 종목의 비중 등 분산투자 요건 등

② 부동산·특별자산재간접펀드*의 투자대상에 SOC사업 관련 특수목적법인(SPC)에 투자하는 펀드**도 포함(현재 SOC에 직접투자하는 펀드에만 투자 가능)

* 부동산·특별자산 펀드 등에 펀드재산의 80% 이상을 투자하는 펀드

** 투자구조 예시 : (현행) '부동산·특별자산재간접펀드 → SOC펀드 → SOC' 만 허용
(개선) '부동산·특별자산재간접펀드 → SOC펀드 → 특수목적법인(SPC) → SOC'도 가능

③ 환매금지형 펀드 추가설정시 기존 투자자에 우선매수기회 부여* 후 실권부분은 기존 투자자외 투자자에 판매 가능한 것으로 명확화

* 환매금지형 펀드는 원칙적으로 추가설정이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기존 투자자에 우선매수기회를 부여한 경우 등은 허용

☞ [조치 필요사항] ① 금투업규정(§4-52) 개정, ② 자본법 시행령(§80) 개정, ③ 자본법 시행령(§242) 개정

추진전략 || 투자자 중심의 판매환경 구축

- 투자자 중심 판매환경 구축을 위한 판매보수·수수료 체계개편
- 투자자의 펀드비용 절감 및 자발적 선택을 통한 펀드가입 확대를 위해 판매채널의 '오프라인 → 온라인' 전환 가속화

II-1 판매보수·수수료 제도정비

- ◆ 판매사간 경쟁제고 및 투자자 중심의 판매를 위해 판매보수·수수료 체계개편(안)을 마련하고, 투자자의 선택기회 확대 지원

(1) 판매보수·수수료 체계개편

- (현황) 현재의 판매보수·수수료* 체계는 ①서비스·가격 경쟁과 ②투자자 관점의 판매를 유도하기 어려운 구조

※ (참고) 주요 펀드비용 개요

- (판매보수)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
→ 펀드재산에서 판매사에 정기적으로 지급
* 예) 자산운용보고서 제공, 펀드 수익률 안내, 민원처리 등
- (판매수수료) 펀드 판매에 대한 대가* → 투자자가 판매사에 1회성으로 지급(예 : 펀드가입시에 판매수수료 차감 후 잔액을 펀드에 투자)
* 판매 관련 상담, 가입서류 등 인쇄·발급, 판매 시스템 구축·운영 등 비용소요
- (운용보수) 운용사의 펀드운용에 대한 대가 → 펀드재산에서 운용사에 정기적으로 지급

- ① 판매보수는 펀드등록시 운용사가 단일률로 설정하고 펀드재산에서 판매사로 지급 → 서비스 차별화, 투자자 인지 등 곤란
- ② 판매사별 펀드성과와 관계없이 판매보수·수수료 수취* → 좋은 펀드보다 높은 보수·수수료 지급 펀드를 추천할 가능성 상존

* 현행 자본시장법(§76④)은 판매사가 직접 펀드운용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펀드성과와 연동한 판매보수·수수료 수취 금지

□ **(개선)** 판매보수·수수료가 투자자 입장에서 결정·수취될 수 있는 체계개편(안) 마련*

※ 이하의 개선방향을 토대로 연구용역·업권TF 구성('21.2월~)을 통해 '21.상반기 중 구체적인 개편안 확정

① **(판매보수 수취방식 다양화)** 현행 방식* 외에도 판매사가 판매보수를 결정하고 투자자에게 판매보수를 직접수취하는 방식 허용

- * 판매보수를 운용사가 단일률로 설정하고 펀드재산에서 판매사로 지급
- 다양한 보수율·서비스 출현유도를 위해 동일펀드 판매사간 보수율 비교공시·투자자설명 등 경쟁환경도 조성

< 신규 방식 도입시 기대효과 예시 >

구분	현행	개선	효과
보수 지급	펀드 → 판매사	투자자 → 판매사	■ 투자자의 판매보수 인지 명확화 → 판매사별 서비스에 부합하는 보수율 결정
보수율 결정	운용사	판매사	■ 다양한 형태의 보수율·서비스* 출현 → 투자자 입장에서 보수율 경쟁 강화 * 예) 펀드 추가 가입시 보수율 할인, 유사펀드 대비 수익률 현황비교 서비스 등

⇒ 투자자의 판매보수 납부 선택권*·편의성**, 판매시스템의 변경비용 등을 고려하여 시행방법·시기 등 세부방안 마련

* 예) 현행 방식 또는 신규 방식 중 투자자의 선택기회 제공

** 예) 신규 방식의 경우 자동이체, 카드납부 방식 등 다양한 수단 검토

[해외사례] 영국은 투자자와 판매채널(자문사·플랫폼[판매사])간 이해상충 문제 해소 등을 위해 판매보수의 운용사(펀드)로부터 수취 금지('12.12월~)

② **(성과연동형 판매보수·수수료 도입)** 투자자·판매사간 ①이해일치 및 ②과도한 성과추구 방지 등 일정요건* 충족시, 성과연동형 판매보수·수수료 허용

* ① 예) 추천펀드만 성과연동 허용, 성과연동펀드의 성과를 정기적 검토 등

② 예) 성과보수 상하한, 투자손실시 수수료·보수를 환급하는 대칭형 구조 등

☞ [조치 필요사항] 연구용역·업권TF를 통한 방안 마련 → 자본시장법 개정

1. 공모펀드 보수·수수료 수준

□ '20.10월말 기준 공모펀드 전체의 평균 판매수수료·판매보수·운용보수 수준은 각 0.68%(선취)·0.26%·0.22%

- 유형별로는 주식형펀드와 부동산펀드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채권형펀드와 MMF는 낮은 수준

< 펀드 유형별 판매보수·수수료 현황('20.10월) >

구분	주식형	채권형	MMF	부동산	전체
판매수수료*(선취)	0.92%	0.18%	0.26%	1.59%	0.68%
보수	판매보수	0.43%	0.10%	0.29%	0.26%
	운용보수	0.45%	0.12%	0.06%	0.22%
	계	0.88%	0.25%	0.16%	0.78%

※ 판매수수료를 수취할 경우 미수취하는 경우보다 보수율이 낮음

2. 공모펀드 보수·수수료 변화 추이

□ 지난 10년간 판매수수료·보수, 운용보수는 지속 하락 추세
→ ETF* MMF 활성화, 수수료·보수 인하 경향 등에 기인

* ETF 수탁고는 '10년말 6조원에서 '20.12월말 52.0조원으로 약 7.7배 증가하였으며, 주식형 ETF의 평균 판매·운용 보수율은 약 0.01%·0.14% 수준

< 펀드 유형별 판매보수·수수료 현황('20.10월) >

구분	'10년말	'20.10월말	증감	증감율	
판매수수료(선취)	0.99%	0.68%	△0.31%p	△31.3%	
보수	판매보수	0.67%	0.26%	△0.41%p	△61.2%
	운용보수	0.47%	0.22%	△0.25%p	△53.2%
	계	1.14%	0.48%	△0.66%p	△57.9%

(2) 투자자에 유리한 보수·수수료 수취방식(클래스) 설명 강화

- **(현황)** 투자기간에 따라 비용상 유리한 펀드 보수·수수료 수취 방식(이하 클래스)이 다르며*, 이를 투자설명서를 통해 안내 중
 - * (장기투자) 판매수수료 선취형(판매수수료 부과 및 판매보수 저렴) 유리
 - (단기투자) 판매수수료 미수취형(판매보수가 상대적으로 높음) 유리
- 그러나, 투자자 인지미흡 등으로 비용상 불리한 클래스 다수판매
 - * 평균투자기간('16~'18) : (판매수수료 선취형) 26월 < (미수취형) 33월
- **(개선)** 펀드 투자권유시 투자자의 예상 투자기간 및 클래스에 따른 비용상 유불리 설명*을 의무화
 - * 예) 투자자의 예상투자기간을 확인하고, 해당 펀드의 클래스 중 예상 투자기간에 비추어 가장 비용이 저렴한 클래스를 비용 순서대로 안내

☞ [조치 필요사항] 자본법 시행령(§53) 개정

(3) 투자자의 판매보수·수수료 선택의 폭 확대

- **(현황)** 비용이 저렴한 온라인 클래스, 판매수수료 선취·미수취 클래스가 충분히 설정되지 않아* 투자자의 펀드비용 절감 곤란
 - * 각 클래스가 존재하지 않는 펀드 비중(펀드수 기준, '20.7월)
: (판매수수료 선취형) 31.1%, (판매수수료 미수취형) 26.2%, (온라인) 25.2%
- **(개선)** 원칙적으로 모든 펀드에 대해* 온라인 클래스, 판매수수료 선취·미수취 클래스 설정 의무화
 - * 예) ETF(거래소에서 거래), 기관투자자 전용 펀드 등은 제외
- 신규펀드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되, 이미 출시된 기존 펀드에 대해서는 업계 자율적인 설정 유도(금투협회 주관)
- ※ 펀드 신규설정시 온라인 클래스 설정을 권고한 「공모펀드의 온라인 판매 및 설정 관련 행정지도」('17.7월~) 법제화도 함께 추진

☞ [조치 필요사항] 자본법(§231) 개정(기존펀드 관련은 금투협회 주관 추진)

II-2 온라인 판매채널 활성화

◆ 온라인 투자자문 활성화, 기존 온라인 판매채널의 기능 강화, 온라인 투자 편의제고 등 온라인 판매로의 전환 가속화

(1) 통합 온라인 자문플랫폼 도입

□ (현황) 온라인 투자자문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투자자의 펀드 탐색·선택 지원이 가능하나, 일반투자자의 활용 미흡*

* 전업 자문사의 개인대상 자문은 총 수탁고(7.9조원, '20.9.)의 약 10% 수준

- ① 통상 자문사가 2~3개 증권사와 계약하고, 해당 증권사 상품을 활용·자문 → 다양한 상품을 분석한 포트폴리오 제시에 한계
- ② 영세자문사는 후선업무(예 : 계약관리, 보고서 생성 등) 관련 별도의 전산시스템 구축에 부담

□ (개선) 「통합 온라인 자문플랫폼」 도입(코스콤)을 통해 자문사의 ①자문대상 펀드확대 및 ②후선업무 등을 지원

[해외사례] 미국은 자문플랫폼을 통한 자문 서비스 제공이 일반화*되어 있고, 자문 플랫폼 서비스도 산업화('19년, 총 69개 플랫폼 사업자)

* '19년, 자문플랫폼 이용 자산관리회사 : 9,250개사(자산관리규모 \$1.2조·2,796만좌)

< 통합 온라인 자문플랫폼 구조 >



- ① 증권사-자문사 시스템*이 플랫폼을 통해 연결 → 자문사는 플랫폼에 참여한 다양한 증권사 상품으로 포트폴리오 제시

* 상품정보 제공, 계좌개설, 펀드판매 등 관련

- ② 자문사가 별도의 자사 시스템 구축 없이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 정보관리, 투자보고서 생성 등 후선업무 처리

⇒ 마이데이터·로보어드바이저 업체 등의 자문플랫폼 참여시 플랫폼을 통한 용이한 데이터 수집·분석 등 시너지 효과 기대

☞ [조치 필요사항] 코스콤·업계 추진(3개 증권사, 13개 자문사 등 참여의향 → 지속확대)

(2) 온라인 펀드슈퍼마켓(포스증권) 기능 강화

- (현황) 펀드슈퍼마켓은 비용이 낮고* 다양한 운용사 펀드가입이 가능하나, 판매상품 한정(펀드), 판매량 제한 등으로 활성화 미흡**

* 보수율(판매수수료 미수취 주식형펀드 평균[운용+판매], '20.10월)

: (펀드슈퍼마켓) 1.0%, (온라인 클래스) 1.3%, (오프라인 클래스) 1.6%

** 전체 공모펀드 중 온라인 펀드슈퍼마켓 판매 비중은 약 0.5%('20.7월)

- (개선) ①펀드 투자일임업 영위 및 ②통합자문플랫폼과 연계 추진

- ① 온라인 펀드슈퍼마켓의 투자일임업 등록을 통해 펀드·퇴직연금*·투자일임** 등 종합적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

* 퇴직연금 신탁업은 旣인가('19.11월)

** 투자자 투자성향·재산상황 등에 맞게 펀드로 구성된 투자 포트폴리오 운영

- ② 온라인 펀드슈퍼마켓의 통합자문플랫폼 참여를 통해 자문 채널과 연계판매 확대 추진

☞ [조치 필요사항] 포스증권 자율 추진

[3] 온라인 등을 통한 운용사의 자사 공모펀드 판매(직판) 활성화

- **(현황)** 직판은 비용이 낮고(통상 온라인클래스 보수 하회) 충실한 상품설명도 가능하나, 판매 인프라 부족 등으로 활성화 미흡*

* 42개 직판사 중 9개사만 공모펀드를 판매(개인대상 영업은 3개사)

- **(개선)** 코스콤·펀드슈퍼마켓 등을 통해 직판사의 온라인 펀드 판매시스템*(코스콤)·상품몰**(펀드슈퍼마켓) 구축사업 추진

* 온라인 계좌개설·펀드매매 시스템 구축[現 4개사 지원, 향후 확대]

** 온라인 클래스 펀드 판매를 위한 직판사별 전용 상품몰

☞ [조치 필요사항] 업계 자율 추진

[4] 모바일·온라인 펀드가입 편의성 제고

- **(현황)** 일부 창구판매시의 관행이 모바일·온라인 판매시에도 일률적으로 적용 → 투자자 불편 초래

① 투자설명서를 PC화면용으로 제공 → 모바일 가독성 미흡

② 온라인 펀드 판매시에 투자권유 여부가 불분명하여 투자 권유시 적용규제*를 일률적으로 준수하는 경향

* (적합성 원칙) 투자에 부적합한 상품 권유금지 → 적합상품 선별 등 필요
(설명 의무) 상품 중요사항 설명 및 이해하였음 확인 → 확인서 징구 등 필요

- **(개선)** ①가독성을 높인 모바일용 투자설명서*를 도입하고, ②온라인상 투자권유여부 판단을 위한 구체적 기준 마련 검토

* 투자설명서의 핵심내용 데이터화 → 판매사가 자사 모바일환경에 맞게 편집

☞ [조치 필요사항] ① 공시서식 개정, ② 업계 논의 후 결정

- MMF·ETF 등 투자자 수요가 큰 상품을 다변화하고, 환금성 및 운용탄력성을 높인 새로운 형태의 펀드를 도입

III-1 외화표시 MMF 도입

- (현황) 수출기업 등 상시적인 여유 외화자금이 발생하는 투자자를 위한 안정적인 단기 운용상품 부족*

* 외화에금은 수익률이 낮으며, 외화표시 펀드는 신용·금리 리스크 등에 노출

- (개선) 외화표시 MMF를 도입하여 안정적 외화 운용수단 제공
 - (외화표시 MMF 개요) 단기 채권·어음 등 외화 단기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MMF로 외화로 납입 및 환매금 지급



- (주요내용) 원화표시 MMF와 동일한 수준으로 규율하되, 외화 자산 특성 등을 감안하여 일부 조정(세부내용 18p 참고)

- MMF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편입자산의 만기·신용등급, 분산투자, 유동성 요건 등은 원화표시 MMF 수준으로 도입
- 단, 편입자산의 안정성·환금성 등을 위해 표시화폐를 제한하고(OECD 가입국 및 중국 등), 신규 MMF 설정요건은 완화*

* 원화MMF는 개인·법인별로 일정금액(3천·5천억원) 초과시까지 신규 MMF 설정 금지 → 1/2 수준으로 완화(원화MMF 대비 낮은 수요 등 감안)

[조치 필요사항] 자본법 시행령(§241) 개정

참고

원화-외화표시 MMF 주요 규제 비교

□ (운용대상 자산) OECD 가입국 및 중국 통화표시 자산*으로 하고, 자산 종류는 원화 MMF와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

* 단, 각 MMF별 단일 통화 자산으로 구성할 필요

** 단, 국가별 지방채·특수채 등 개념이 상이하므로 채권의 경우는 잔존만기 1년 이내 채무증권으로 신용등급 요건 충족시 편입허용

□ (규제) 원화 MMF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되, 외화 자산 특성을 반영하여 신규 MMF 설정요건* 등은 합리적으로 조정

* 원화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외화투자 수요 등 감안하여 요건 완화

구분		원화표시 MMF	외화표시 MMF(안)
운용대상 자산	표시 화폐	■ 원화	■ OECD 가입국 및 중국 등 통화 (단, 각 MMF별 단일 통화)
	편입 자산	■ 잔존만기 5년내 국채	■ 잔존만기 5년내 OECD가입국·중국 등 국채(신용등급 요건 충족 필요)
		■ 잔존만기 1년내 지방채·특수채·회사채·CP(1년) 등	■ 신용등급 요건을 충족하는 잔존만기 1년내 채무증권(채권종류 미규정)
		■ 잔존만기 6개월내 금융기관·우체국 예치, CD	■ 잔존만기 6월내 국내 외화예금·CD, 해당 통화국 금융기관 예금·CD
	■ RP매수, 타MMF 등	■ 외화 RP매수, 타 외화 MMF (국내등록 필요) 등	
	신용 등급	■ 최상위 2개 신용등급 이내	■ 좌동(단, 해외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 등급도 국내 등급으로 전환하여 활용 가능)
분산투자	■ 동일인 발행 채무증권 등 투자한도 (5~0.5%), 채무증권 40%이상 편입 등	■ 좌동	
유동성 요건	■ 자산 가중평균잔존만기를 75일내, 유동성 자산 비중* 등 * 잔존만기 1영업일내 자산 : 10% 이상, 7영업일내 자산 : 30% 이상	■ 좌동	
기타	■ 장부가 평가 * 안전자산 편입비중 30%이하 법인 MMF는 시가평가 예정('22.4.~)	■ 좌동(제도개선 사항 반영)	
	■ 개인·법인별로 일정금액* 초과시 까지 신규 MMF 설정 금지 * (개인) 3천억원, (법인) 5천억원	■ 신규 MMF 설정요건 완화 * (개인) 1,500억원, (법인) 2,500억원	

Ⅲ-2 ETF 상품 다양화

- **(현황)** ETF는 '02년 도입이후 낮은 비용, 거래 편의성 등을 바탕으로 공모펀드의 주력상품으로 성장 중

< ETF 시장 현황 추이 >

구분	'02	'04	'06	'08	'10	'12	'14	'16	'18	'20
순자산총액(조원)	0.3	0.5	1.6	3.4	6.1	14.7	19.7	25.1	41.0	52.0
종목수(개)	4	4	12	37	64	135	172	256	413	468
일평균거래대금(억원)	327	113	230	981	1,102	5,442	6,883	7,900	14,619	38,433

- 주요국 등과 비교시* 시장규모·상품다양성 등 측면에서 성장 잠재력이 크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필요

* 시총대비 ETF 비중('20.11.) : (한국) 2.4%, (미국) 12.6%, (일본) 7.7%

- **(개선)** 선진국 사례 등을 참고하여 규제정비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상품출시 여건 마련

① (주식형 액티브ETF* 도입) 지수대비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 액티브ETF를 '20.7월 상장규정 개정을 통해 既 허용**

* 비교지수와 ETF 순자산가치 변동율간 상관계수 요건을 완화(0.9 → 0.7)한 ETF(채권형 액티브 ETF는 '17년 도입 → '20.12월 기준, 11개·2.1조원)

** '20.12월 기준 3개 주식형 액티브ETF 출시(348억원)

⇒ 선진국의 액티브ETF 제도개선 경과(예 : 자산구성내역[PDF] 일단위 공개요건 완화) 등을 보아가며 추가적인 제도개선 여부 검토

② (존속기한 있는 ETF 허용) ETF는 상장요건으로 존속기한 설정을 금지하고 있어 만기까지 보유를 원하는 투자* 흡수 한계

* 미국은 만기가 설정된 다수 채권형 ETF가 상장('20.8월 기준 약 65종목·\$190억)

⇒ 채권형 ETF에 대해 만기가 있는 ETF 출시 허용

③ (혼합형 ETF 지수요건 완화) 증권 ETF의 기초지수 구성요건이 '채권' 및 '채권외 증권'으로 이원화되어 혼합형 ETF 구성 제한*

* (채권) 종목수 10종 이상 등, (채권외) 종목수 10종 이상 등 → 혼합형 기초지수는 채권 10종 이상 + 채권외 증권 10종 이상으로 구성 필요

⇒ 기초지수 구성요건을 자산유형별 구분 없이 통합*

* 예) 채권 5종 + 주식 5종으로 기초지수 구성 가능

☞ [조치 필요사항] ① 제도개선여부 검토, ②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113) 개정, ③ 금투업규정 (§7-26) 개정

Ⅲ-3 새로운 형태의 펀드 도입

□ (현황) 부동산·인프라 등 대체투자펀드에 대한 수요가 높으나, 공모운용이 어려워* 대체투자 관련 공모펀드가 부족**

* 환매가 제한되는 폐쇄형 펀드로 일반투자자가 요구하는 환금성 충족이 어렵고, 투자자 모집에 장기간 소요되어 좋은 물건에 신속한 투자 곤란

** 대체투자펀드(부동산·특별자산펀드) 중 공모펀드 비중은 약 3% 이하

□ (개선) ①환금성 및 ②운용 탄력성을 제고한 새로운 형태의 펀드를 도입 → 공모 대체투자펀드 등의 설정·운용 용이성 제고

① 환매금지형 펀드이나, 주기적으로 펀드재산의 일정비율 한도로 투자자에게 환매기회를 제공*하는 펀드 도입(가칭 '기간환급 펀드')

* 예) 매분기 펀드재산의 10% 한도내에서 투자자 신청을 받아 환매

[미국사례] 유사한 성격의 '인터벌펀드' 제도 운용(약 \$270억 규모, '18년)

② 통상 공모펀드의 최초 설정규모가 작아 실물투자 등이 곤란 → 투자대상 자산, 펀드종류가 변경* 가능한 펀드 허용 검토

* 예) 설정후 초기에는 채권 등에 운용 → 펀드규모 확대후 SOC펀드로 전환

☞ [조치 필요사항] ① 자본법 (§230) 개정 ② 자본법 시행령 (§217) 개정

추진전략Ⅳ 투자자 지원인프라 강화

- 펀드·판매사 정보의 효과적 제공 → 투자자의 펀드선택 지원
- 복잡한 펀드구조 및 유동성 리스크 관련 투자자보호 강화

IV-1 펀드·판매사 관련 정보의 효과적 제공

◆ 펀드 비교·분석 서비스 활성화 및 판매사 판매펀드 성과의 용이한 확인을 위해 공시정보 제공방식을 개선

(1) 펀드 비교·분석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공시정보 제공

- **(현황)** 금융투자협회가 공모펀드별 수익률·수수료 등을 온라인 공시하고 있으나, 투자자의 직접활용은 용이하지 않은 측면*
 - * 현실적으로 투자자가 수많은 펀드의 정보를 비교·분석하기 곤란
 - 펀드 비교·분석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핀테크 업체, 판매사 등*(펀드관련회사)도 관련정보 획득에 시간·비용 투입이 과다
 - * 예) 펀드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핀테크 업체, 판매사 창구상담 인력 등
- **(개선)** 금투협회의 펀드 공시정보를 표준화, 데이터 형태로 제공 → 투자자 접점에 있는 펀드관련회사가 펀드정보 분석·지원

☞ [조치 필요사항] 금융투자협회가 펀드관련회사에 표준화된 정보 제공

(2) 판매사별 판매펀드 성과의 종합적 제공

- **(현황)** 판매사별 판매펀드의 성과 등은 투자자의 판매사 선택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으나, 투자자가 관련정보 확인 곤란
 - * 판매사별 판매펀드의 벤치마크 대비 누적수익률 현황(주요 32개사, '06.10~'18.9월) : 초과수익 13개사 < 초과손실 19개사 [투자자보호재단]
- **(개선)** 판매사별 판매펀드의 성과에 대한 종합적 정보*를 공시
 - * 판매사별로 판매한 펀드의 평균수익률, 수익률 변동성 등

☞ [조치 필요사항] 금융투자협회가 관련정보 공시

◆ 재간접 펀드, 펀드 유동성 리스크 관련 투자자보호 제도보완

(1) 재간접 펀드 관련 투자자 정보제공 강화

- **(현황)** 해외펀드 등 타펀드에 투자하는 공모펀드가 증가 추세이나, 피투자펀드의 기초자산 등에 대한 정보안내가 제한적*
 - * 해외 기초자산의 부실, 해외 피투자펀드의 유동성 관리 실패 등의 경우 국내 공모펀드 투자자 피해발생 우려
- **(개선)** 복층 투자구조 펀드는 최종 기초자산* 등에 대한 정보를 ①투자설명서·②자산운용보고서·③펀드영업보고서**에 기재
 - * 예) 공모펀드 → 해외펀드 → 해외채권 투자구조 : 해외채권이 최종 기초자산
 - ** ①·② 투자자에 제공 / ③ 금융당국에 제출

☞ [조치 필요사항] 자본법 시행령(§92·§94) 및 공시서식 개정

(2) 유동성 리스크 관리

- **(현황)** 투자자가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펀드가 대다수*인 공모펀드는 투자자의 환매 대응에 따른 유동성 관리가 필수적
 - * 공모펀드 중 개방형 펀드 비중 약 97% ('20.8월)
- **(개선)** 개방형 펀드에 대한 ①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②유동성 위험관련 투자자 정보제공 및 감독당국 보고 강화
 - ① 연1회 이상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테스트 시나리오별 유동성 리스크 비상계획* 마련('20.4월 사모펀드 대책과 병행 추진중)
 - * 리스크 대응방안, 운용사·수탁기관 등의 소통·협력 방안 등
 - ② 유동성 리스크 현황,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등을 투자설명서·자산운용보고서·펀드영업보고서에 기재

☞ [조치 필요사항] ① '21년중 시범실시 후 법령개정 추진, ② 자본법 시행령(§92·§94) 및 공시서식 개정

IV. 향후 추진계획

- **(법개정 사항) '21.4월까지 입법예고하고, 법개정 전이라도 일부 과제***는 행정지도 및 업계 자율추진 방식으로 우선시행
 - * 시딩투자 실효성 제고(행정지도), 판매보수·수수료 선택 폭 확대(자율추진) 등
-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 사항*) '21.3Q까지 개정 완료 추진**
 - * 성과보수펀드 활성화, 운용규제 개선, 외화표시 MMF 도입 등
- **(방안마련 및 업계 자율추진 사항) '21.2Q내 방안마련* 또는 시행****
 - * 판매보수·수수료 체계개편 / ** 통합 자문플랫폼 도입 등

추진과제	조치 필요사항	일정
I. 펀드운용의 책임성·효율성 제고		
① 펀드운용의 책임성 강화 ① 운용사의 공모펀드 시딩투자 실효성 제고 ② 성과보수펀드 활성화	자본법 개정 등 자본법 시행령 개정	'21.4월~ '21.3Q
② 펀드운용의 효율성 제고 ① 펀드의 투자전략 변경 용이성 제고 ② 운용규제 개선 지속	자본법 개정 등 자본법 시행령 개정 등	'21.4월~ '21.3Q
II. 투자자 중심의 판매환경 구축		
① 판매보수·수수료 제도정비 ① 판매보수·수수료 체계개편 ② 투자자에 유리한 보수·수수료 수취방식 설명 강화 ③ 투자자의 판매보수·수수료 선택의 폭 확대	방안 마련 자본법 시행령 개정 자본법 개정	'21.2Q '21.3Q '21.4월~
② 온라인 판매채널 활성화 ① 통합 온라인 자문플랫폼 도입 ② 온라인 펀드슈퍼마켓 기능 강화 ③ 온라인 등을 통한 운용사의 공모펀드 직판 활성화 ④ 모바일·온라인 펀드가입 편의성 제고	플랫폼 개발·서비스 업계 자율추진 업계 자율추진 기업공시기준 개정 등	'21.2Q~ '21.2Q~ 계속추진 '21.3Q
III. 다양한 공모펀드 출현 유도		
① 외화표시 MMF 도입	자본법 시행령 개정	'21.3Q
② ETF 상품 다양화	금투업규정 개정 등	'21.3Q
③ 새로운 형태의 펀드 도입	자본법 개정 등	'21.4월~
IV. 투자자 지원인프라 강화		
① 펀드·판매사 관련 정보의 효과적 제공 ① 펀드 비교·분석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공시정보 제공 ② 판매사별 판매펀드 성과의 종합적 제공	금투협회 추진 금투협회 추진	'21.2Q~ '21.2Q~
②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보완 ① 재간접 펀드 관련 투자자 정보제공 강화 ② 유동성 리스크 관리	자본법 시행령 개정 등 자본법 시행령 개정 등	'21.3Q '21.3Q

붙임1

공모펀드 시장 현황

① 공·사모펀드 순자산 및 펀드 수

(단위 : 조원, 개)

구분	'15	'16	'17	'18	'19	'20
수탁고	452.0	506.0	552.3	600.0	720.4	784.6
공모	213.8	212.2	217.5	213.6	242.3	274.7
사모	238.2	293.8	334.8	386.4	478.1	509.9
(경영참여형)	38.4	43.6	45.5	55.7	61.7	67.2*
(전문투자형)	199.8	250.2	289.3	330.7	416.4	442.7
펀드수	13,037	13,845	13,292	14,953	15,923	15,141
공모	3,746	3,608	3,878	4,265	4,189	4,651
사모	9,291	10,237	9,414	10,688	11,734	10,490
(경영참여형)	316	383	444	583	721	797*
(전문투자형)	8,975	9,854	8,970	10,105	11,013	9,693

* '20.9. PEF 이행액·수 기준

② 공모펀드 유형별 순자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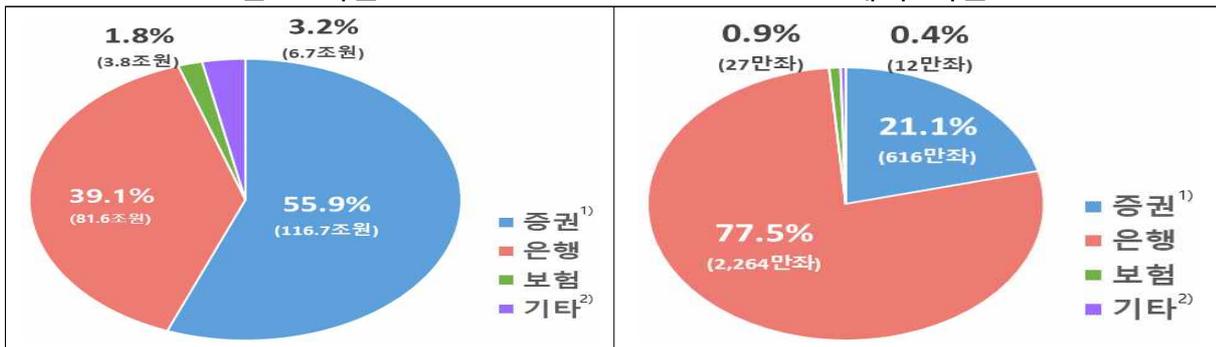
(단위 : 조원, %)

집합기구	'15	'16	'17	'18	'19	'20	비중
증권	111.0	105.4	121.0	119.4	138.9	138.6	50.5
단기금융	86.1	87.2	72.6	70.1	74.1	102.2	37.2
파생상품	12.7	14.0	18.4	18.6	20.7	25.3	9.2
부동산	0.9	1.3	2.0	2.4	3.4	3.4	1.2
특별자산	3.2	3.5	3.5	2.6	2.5	2.5	0.9
혼합자산	-	-	0.1	0.5	2.8	2.7	1.0

③ 공모펀드 판매채널별 판매비중('20.9. 기준)

< 잔고 기준 >

< 계좌 기준 >



※ 1) 펀드슈퍼마켓 포함 / 2) 기타 : 운용사 직판, 단위조합, 우정사업본부 등

④ 자산운용사 현황(단위 : 개)

구분	'15	'16	'17	'18	'19	'20
공모	73	74	75	74	75	75
사모	20	91	140	169	217	251
합계	93	165	215	243	292	326

투자자의 펀드가입 관련 현황

※ 투자자보호재단 '20년 펀드투자자 조사결과('20.10.16~30일간 약 2,500명 대상 설문조사)

- (가입행태) 58.6%의 투자자는 펀드를 사전결정하지 않고 판매사를 방문하여 가입 펀드 선택
 - 창구직원의 권유가 펀드가입의 계기*가 되는 경우 다수
 - * 자발적 의사 35.7%, 판매사 직원 권유 31.0%, 주변 권유 18.2% 順
 - 투자자 상당수가 주로 금융회사(판매직원,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로부터 펀드정보를 취득*
 - * 금융회사 제공 정보 35.8%, 인터넷 23.8%, 주변인 16.3%, 신문·TV등 13.4% 順

- (가입채널) 금융회사에 직접방문해 가입한 비율이 54.7%로 다수이며, 펀드슈퍼마켓 등을 통한 가입은 8.2%로 낮은 편
 - 다만, 금융회사의 모바일 판매 비중은 증가세

< 판매 가입채널별 비중 현황 >

구분	창구방문	금융사 웹사이트	모바일 앱	투자권유 대행인	펀드 슈퍼마켓
'19년	55.8%	25.6%	17.9%	10.2%	8.2%
'20년	54.7%	25.0%	23.3%	11.5%	8.2%
판매사별	100.0%	100.0%	100.0%		
은행	67.8%	49.6%	47.1%		-
증권	30.7%	47.6%	48.9%		
직판	1.4%	2.9%	4.0%		

- (판매관련 서비스 수요) 직원에게 적극적 조언*이나 맞춤형 솔루션** 등 자문성격의 서비스를 기대하는 투자자가 다수
 - * 내 투자상황에 맞는 포트폴리오·상품 추천, 포트폴리오 변경 조언(부분적 자문)
 - ** 개인상황까지 종합고려하여 장기투자상담·솔루션 제공(완전한 자문)

< 판매 관련 서비스 수요 수요 >

구분	맞춤형 솔루션	적극적 조언	자산정보제공, 거래 처리 등 단순관리	신속·정확한 거래처리만
'19년	16.6	43.9	16.4	23.1
'20년	16.9	41.7	18.6	22.8

- 한편, 상당수 투자자(80.2%)가 펀드의 종류가 다양하여 선택하기 어렵다고 응답